

의안번호	2204233
의 퇴 인	김기웅의원
회 답 일	2024.10.16.
추계번호	24D4000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 (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) 신설	- 전시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6월 28일을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·재량 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 (6·25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지정(안 제11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전시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6월 28일을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‘6·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’는 매년 ‘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’ 행사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, 통일부는 ‘6·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’에 1억원을 지

원하고 있으며¹⁾, 이 중 약 3,500만원이 행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

1) 제12조(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)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·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